

##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 알림 공시송달 공고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(행위허가 기준 등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규정에 의거 「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알림」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6. 22.

### 파주시장

1. 공고내용 :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알림
2. 공고기간 : 2026. 6. 22. ~ 2026. 7. 6.(15일간)
3. 공고장소 : 파주시청,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
4. 관련법규 :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
5. 공시송달 내역

대지위치	건축주	위반내용 및 규모	위반법규	반송사유
파주시 금촌동 51-49 장안3차아파트 103동 ***호	임OO	8.25㎡ 증축	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	폐문부재

#### 6. 기타사항

- 공고 기간이 경과하면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의 제3항에 따라 상기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,
- 상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「건축법」 규정 등에 의한 행정처분(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) 할 예정이오며,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주택과 ☎ 031-940-4945】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